

#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NAKSNW –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orth West Chapter)

## 운영회칙

### 제 1 장:총칙

#### 제 1 조(명칭)

본 협의회는: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부른다.

#### 제 2 조: (영역 및 본부 사무실)

본 협의회는 영역은 서북미지역(Alaska,Idaho,Montana,Oregon,WashingtonState)으로 하며 본 협의회는 본부 사무실은 워싱턴주에 둔다.

#### 제 3 조: (목적)

본 협의회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운영에 찬동,협력하고 한인 학교간의 상호 유대 강화.
2.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개발 육성.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4. 미국 사회에 적응 능력 배양.
5. 자랑스러운 한국계 시민으로서의 인격 교육.

#### 제 4 조(사업)

본 협의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운영 한다.

1. 한인학교 교육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나의꿈 말하기대회,학력어휘경시대회,합창대회 및 학예경연대회(글짓기,그림그리기,운동회) 그 외 한국어,한국 문화교육 관련 사업
3.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4. 대한민국정부,교육관련 부처에서 배부되는 교재 배급.
5. 민족교육을 위한 계몽.
6. 기타 필요한 교육사업.

제 5 조: (사업 및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11 월 1 일부터다음해 10 월 31 일로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본 협의회는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학생수 10 인 이상의 학교로서 본 협의회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을 마친 학교이며, 본 협의회는 제반사업을 토의 결의하는 총회에 참여하게 되며 각 학교는 2 명의 대표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준 회원은 학생 수 10 인 이하의 한인학교, 정회원 자격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교육단체나 본 협의회 관할지역 이외의 주 또는 국가(카나다포함)의 학교 및 기관이 본 협의회 목적과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할시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가입 시킬 수 있다.
3. 준 회원자격의 학교 중 협의회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학교에 대해 임원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 7 조: (입회 절차)

1. 본 협의회는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학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입회 신청서와 학생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학생 수의 변동이 있을 시 에는 수시 보고 해야 한다.)
2. 임원회와 이사회는 제출된 입회 신청서를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3 주 내에 해당 단체에 통보 한다.
3. 책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받는다.
4.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 후 1 년간 준 회원 자격을 유지 해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회원과 준회원에 차등을 줄 수 있다.
2. **권리:**정회원 대표자는 결의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나, 결의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회원학교 대표자로서 선출된 회원이 그의 소속 학교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제 3 장: 조직 및 운영

#### 제 9 조: (초직)

본 협의회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 및 감사로 구성한다.

#### 제 10 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본 협의회 최고의결 기관으로 임원회, 이사회, 제반 사업 위원회, 감사의 보고를 접수 하고 의결한다. 총회는 각 정회원 대표자 1 명(교장또는교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장단(회장, 부회장), 이사장을 지명위원회에서 보낸 안건을 인준,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통과
3. 신년도 사업계획 인준, 전년도 사업 수행 보고 접수
4. 회칙 개정
5. 이사 인준
6. 기타 이사회가 제출하는 중요한 사항
7. 차기 회장후보가 복수 추천일 경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 한다.

#### 제 11 조: (임원회)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본 협의회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 집행, 보고하며 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회장이 임명한 회계, 편집 등 약간명의 간사로 구성 한다.

**회장:**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내외적인 사업협약과 그 운영을 책임지고 통솔한다.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1 회연임할 수 있으며 총 2 년을 연임 했더라도 특별시국이나 차기 회장의 공백시 지명 위원회의 건의로 1 년을 더 할 수 있다.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총무:**본 협의회는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회계:**본 협의회는 재정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총회,이사회 임원회에 재정보고를 한다.

**간사:**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한 기타 간사는 소정의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 한다.

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와 이사회의 건의와 결의사항을 중심으로하여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2. 전년도 사업경과 보고
3.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 보고.
4. 신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5. 신입회원 학교 접수 및 납부 사항 보고.
6. 회원 리스트와 서류 관리 및 비치
7. 운영 회칙 개정에 필요한 준비.
8. 총회가 결의한 제반 단기 및 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9. 협의회 사업 집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10. 자문 위원 추천.
11.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12.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담당.

제 12 조: (이사회)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이사회 회칙”에 준한다.

제 13 조(감사)

1. 감사는 임원회가 준비한 예산, 결산의 회계 업무 및 필요한 행정 분야를 감사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이사회는 임원 개선시 1 명의 감사를 선출 이사중에서 선임 한다.
2. 감사 시행 내규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14 조(자문위원 및 고문)

**자문위원:**본 협의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사라야 하며, 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고문:**본 협회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전직회장 및 전직이사장 전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4 장 회의 및 의결

##### 제 15 조: (회의)

본 협회회의의 사업 수행과 주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이사회를 갖는다.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0 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2 주전에 공지해야하며 출석회원으로 성원된다.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재적회원 25 인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제출, 요구할 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그 소집 요청일로부터 3 주내에 소집 되어야 하며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임원회:**임원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1 년에 2 회 이상 소집 하여야 한다.

**이사회:**이사회는 이사장이나 협의회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이 의제를 명시 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1 년에 1 회 이상 소집 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제 16 조: (의결)

1. 본 협회회의의 일반 결의 사항은 성원(전자투표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운영회칙 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된다.
2. 대표자의 총회 출석이 불가할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3. 의결 방법은 거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투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제 5 장: 재정

##### 제 17 조: (수입)

본 협회회의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하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 제 6 장:운영 회칙 개정 및 부칙

### 제 19 조: (회칙개정)

본 협의회는 운영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내에 회칙 개정 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정 위원회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정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제 20 조: (상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벌 위원회를 이사회에 건의, 소집할 수 있다. 상벌 위원회는 이사 5 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

- 1.(포상): 본 협의회는 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2.(징계): 징계는 본 협의회는 명예를 현저히 실추 시킨자, 본 협의회는 운영을 방해한 자에 대해 상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는 자격 정지와 영구제명이 있다.
- 3.징계 사안의 시효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 부터 3 년으로 한다.

### 제 21 조: (부칙)

본 회의에 명시 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경과조치)

1. 본 운영 회칙은 2000 년 10 월 21 일 총회에서 통과 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2001 년 11 월 29 일 이사회 통과. 총회 통과일 : 2002 년 11 월 16 일
3. 개정:2003.10.18(정기총회)
4. 개정:2004.10.23 일(정기총회)
5. 개정:2016 년 10 월 22 일 정기 총회에서 당 회칙제 11 조를 개정함.
6. 개정:2018 년 10 월 7 일(정기총회)
7. 개정:2021 년 8 월 1 일 이사회 통과,2021 년 10 월 17 일 총회통과

## 이사회회칙

###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서북미지역 협의회 이사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서북미지역 협의회 운영을 돕고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목적, 운영에 찬성하며, 지역 운영체로서 워싱턴주(State of Washington)와 미 연방정부(US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비영리 교육단체 법인체로 등록 되어 운영 한다.

제 3 조: 본 이사회에는 지명, 자격 심사 위원회를 둔다.

- 1) 지명위원회는 차기년도 회장을 지명 추천하여 차기 회장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 2)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된다.

### 제2장 이사

제 3 조

- 1) 본회는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를 두며 50 명 내외로 한다.
- 2) 선출 이사는 민족 교육을 돕는 교육자와 관심을 가지는 사회 유지 중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본 협의회 의 현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4) 선출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모든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 6) 2 회 이상 이사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이사로서의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 5 인 이상의 동의로 이사(당연직과 선출직포함)를 상시 해촉할 수 있다.

### 제 3 장 기능

제 4 조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차기 회장을 지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일에 적극 지원

- 1) 회장단과 선출이사 후보 추천 및 이사회 회장단과 감사 선출
- 2) 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책 자문.
- 3) 회칙의 개정 또는 제정
- 4) 회비책정.
- 5) 임원회로 부터의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서 접수.
- 6) 임원회가 편성한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서 심의.
- 7)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제반 단기 및 정기 사업 계획 수립 및 건의.
- 8) 본 협의회와 사업 접수처리 진행에 필요한 재정 조정 및 지원.
- 9) 이사 및 자문위원 추천

#### **제 4 장 임원/운영이사**

제 5 조 이사회 임원의 선출,임무,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되고 임기를 2 년으로 한다.
- 2) 부이사장: 정기 이사회에서 2 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정기 이사회에서 1 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총무는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 4) 재무: 정기 이사회에서 1 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재무는 이사회의 경리 사무를 담당하는 일 외에 협의회와 재정 업무를 감독하고 예산 편성에 협조한다.
- 5) 감사: 정기 이사회에서 2 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감사는 재정,행정으로 분리하여 협의회 및 이사회의 재정을 감사하며,1 년간의 재정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제 5 장 회의**

제 6 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두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 결과는 이사의 임무를 다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 정기 이사회: 매년 1 회 9 월 중에 개최 한다.



- 2) 임시이사회: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기 총회까지 지연할 수 없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 및 협의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 이사 임원회: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 6 장 위원회

-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지명 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의 임원 후보를 추천한다.
- 3) 지명 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지명 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 제 7 장 재정

### 제 7 조

- 1) 이사회는 재정은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로 충당하며 이사회의 운영 경비를 제한 전액을 협의회 운영에 사용한다.
- 2) 선출 이사 및 당연직 이사는 년 \$300.00 이상을 회비로 납부한다.

## 제 8 장 부칙

제 8 조: 이사회 회칙 개정은 정기 이사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가결로 통과한다.

제 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10 조: 본 회칙은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경과조치

1. 본 운영회칙은 2000 년 10 월 21 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2001 년 11 월 29 일 이사회 통과 총회통과일:2002 년 11 월 16 일
3. 개정:2003 년 10 월 18 일 정기총회
4. 개정:2004 년 10 월 23 일 정기총회
5. 개정:2021 년 8 월 1 일이사회통과

# 감사 내규

## 제 1 장

본 규정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서북미지역 협의회 운영세칙 제 3 장 13 조 “감사”항에 의거 제정된 “감사내규”로 칭한다.

## 제 2 장

감사는 선출 이사중에서 1,2 명을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 하며,임기는 2 년으로한다.

## 제 3 장 감사의 의무

- 1) 감사는 정기 이사회와 정기 총회 및 신입 회기인수, 인계 전에 제출할 재정, 회계업무 및 행정분야를 감사 필하며 최소 년 1 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주정부, 연방정부에 등록된 법적 사항에 준수한 합법적 운영체제를 지속하는지를 점검하고 모든수입에 관계된 재정이 비영리 교육단체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내역인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할 의무를 가진다.
- 3) 감사는 본 협의회외의 재정관리와 행정적 체제상에 법적 위배가 되는 사항과 변경된 법규에 의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접수하고 심의 한다.
- 4) 감사는 본 협의회에 관련된 재정 및 행정적 감사를 필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서면보고 한 업무로 감사의 임무를 필하게 되며 보고된 감사자료는 공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5) 감사는 본 협의회재산, 특별 사업 예산액, 명의등록, 이전, 포기등 본 협의회외의 부채 및 재산권에 대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 6) 감사 보고서는 최소 7 년을 보관하고 이의 폐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4 장

특별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이사 10 명 이상의 서명 요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감사 시행을 통보하고 감사는 이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에 보고케 한다.

## 제 6 장

본 감사 시행 내규는 이사회의 통과로 유효하며 개정은 정기 혹은 임시 이사회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효한다. \*경과조치 초안채택-정기이사회(2002 년 11 월 23 일)

##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 지명위원회 세칙

이사회 회칙 제 6 조

#### 제 1 조: 목적

- 1)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운영회칙과 이사회 회칙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지명위원회는 신임회장과 부회장,이사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지명위원 및 회원학교 다수 교장이 추천한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심의한다.(당세칙 6 조참조)

#### 제 2 조: 위원 구성

- 1) 지명위원회 구성은 현직 이사장과 부이사장 1 인은 임기간 당연직으로 하고 전직회장 2 인과 정회원학교 대표 1 인을 포함총 5 인으로 한다.

#### 제 3 조: 위원 선출

- 1) 2 명의 전직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정회원 학교대표 1 인은 년초에 개최되는 교장(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다.그리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 제 4 조: 위원회 소집

- 1) 인선에 관한 사안이 있을시 이사장이 지명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위원장은 소집일로부터 2 주전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소집을 통보한다.

#### 제 5 조: 의결

지명위원회의 성원은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인선에 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지명위원회는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위임장은 인정 하지 않는다.)

#### 제 6 조: 피선거권자 자격 및 심의 방법

- 1) 회장의 피선거권의 자격은 본 협의회 정회원 학교의 교장(또는교감)으로 3 년이상 봉직, 현직 또는 본 협의회 전,현직 부회장의 경험을 가진자 또는 본 협의회 임원,이사장의 2 년이상 봉사한 자 로서 협의회 운영과 리더쉽이 뛰어난 자.

- 2) 부회장의 자격은 본 협의회 정회원 학교의 교사로서 3년 이상 봉직하고 본 협의회 전,현직 임원 또는 이사의 경험을 갖춘자.
- 3)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본 협의회 운영회칙 및 지명위원회 세칙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관례를 적용한다.

#### **제 7 조: 후보자 추천**

- 1) 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은 지명위원회가 추천한 자와 정회원 학교의 교정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개최 30일 전에 지명위원장에게 후보등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자격심의를 받아야 한다.
- 2) 후보자 추천은 당 세칙 6조 1,2항의 자격을 갖춘자로 추천한다.

#### **제 8 조: 임무**

- 1) 지명위원회는 자격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보자(단수또는복수)의 명단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경과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제 9 조: 임기**

- 1) 지명위원회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0 조 : 효력**

- 1)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지명위원회 세칙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1 조: 권한**

- 1)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사항은 총회에서 거부될 수 없다.

#### **경과조치**

개정: 2021년 8월 1일 이사회 통과